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524
----------	------

2026년 3월 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2월 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년 2월 12일

다. 상정일자: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6년 3월 6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미래한강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도입을 위한 이용 기준을 추가하고
- 장기간 조례 미개정과 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미운영 시설인 '그 밖의 선박' 조항 삭제(안 별표 2 제1호).

- ‘테니스장’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‘피클볼장’을 추가(안 별표 2 제2호).
- ‘강변물놀이장’을 ‘물놀이장’으로 문구를 수정 및 ‘전망호텔’은 불필요한 하한액을 삭제하고 상한액만 설정(안 별표 2 제3호).
- 한강공원 내 미설치 시설인 ‘야외원형극장’과 타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한 ‘야외 무대 사용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(안 별표 2 제5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4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 이용료를 현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조성된 ‘피클볼장’ 이용료를 추가하며, ‘전망호텔’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안 제3조는 인용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고, 안 제17조제1항제10호 역시 법령 체계상 단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.
- 안 [별표 1]과 [별표 2]는 한강공원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‘그 밖의 선박’ 및 ‘야외원형극장’, 하천점용허가로 운영 중인 ‘야외무대’를 공원이용 시설에서 제외하고 ‘피클볼장’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며, 숙박시설인 ‘전망호텔’ 이용료를 1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임.

#### <전망호텔 이용료 관련 개정 내용>

현행			개정안			
3. 휴양시설			3. 휴양시설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	비고		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)	345,000~ 500,000원	극성수(세계 볼꽃 축제 등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)	1백만원 이하 <삭제>

현행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체계를 현 운영<sup>1)</sup>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조성된 피클볼장 이용료<sup>2)</sup>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이용료에 준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1) ‘그 밖의 선박’ 및 ‘야외원형극장’은 미운영, ‘야외무대’는 하천점용허가로 운영 중

2) 7,000~11,000원(1회, 2시간 이내)[국내 사설 시설의 경우 15,000원(1회, 1시간 이내) 이상, 파주 공공 시설(기존 배드민턴장 활용)의 경우 8,000원(1회, 2시간 이내)]

‘전망호텔’ 이용료의 경우 동 시설(자립형 민간위탁)의 운영 수지 악화를 사유로 현행 이용료(345~500천원) 규정을 삭제하고 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이용료인 1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여 조정하고 있는데, 이는 위탁 업체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현행보다 2배 이상의 이용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바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또한, 방치되었던 한강 교량 시설물을 정비하여 전망호텔<sup>3)</sup>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운영 중단으로 동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위탁자의 안정적 수익성 확보(개선)는 필요할 것이나, 2024년 운영수익 현황 자료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880만원<sup>4)</sup> 발생하고 있어 당장 이용료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.

다만, 2025년부터 서울시 수익 배분률 증가(’24년 20% → ’25년 이후 50%), 공실률 증가 가능성(인기 하락), 민간 위탁자의 지속적 수익성 확보(개선) 측면에서 현행 이용료 범위(극성수기 제외)를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여 좀 더 유연하게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임.

**<2024년 전망호텔 운영수익 현황>**

구 분	금액(천원)	비 고
매 출 액	58,255	객실 수입 등
매출원가	746	-
매출총수익	57,509	매출액 - 매출원가
판매비와 관리비	51,291	인건비, 외주용역비, 공과금 등
영 업 수 익	6,217	매출총이익 - (판매비 + 관리비)
영업외 수익	3,578	취소수수료 등
영업외 비용	1,00	기부금 등
단기 순이익	8,796	영업이익 + 영업외이익 - 영업외비용

3) 2024년 6억 7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된 이후 민간위탁(자립형) 방식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운영 중

4) 2025년도 영업이익 778만원 전망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한강 전망호텔 이용료를 100만원 이하(상한액 기준 100% 인상)로 상향·단일화하는 것은 이용료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위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, 현행 이용료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한강 전망호텔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2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6년 3월 6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한강 전망호텔의 운영 수지 악화로 인하여 이용료를 100만원 이하(상한액 기준 100% 인상)로 상향·단일화하는 것은 이용료의 급격한 인상과 위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,

현행 이용료 체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시민 수용성 제고 및 한강 전망호텔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한강 전망호텔 이용료 상한액을 조정함(안 별표 2 제3호).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제3호 휴양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휴양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
캠핑장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.
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
	캠핑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
강변 물놀이장	어린이( 6~12세)		1,000~1,500원	
	청소년(13~18세)		1,500~3,000원	
	성 인(19세 이상)		3,000~3,200원	
수영장	어린이( 6~12세)		2,700~3,800원	
	청소년(13~18세)		3,600~5,100원	
	성 인(19세 이상)		4,500~6,400원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(4인 이하 기준)		750,000원 이하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11. ~ 1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 -----.</p> <p>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. ----- 각 목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0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 ~ 라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1. ~ 1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7 369 550 728"> <tr> <td data-bbox="167 369 247 728">2. 체육 시설</td> <td data-bbox="247 369 550 728">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67 750 247 907">5. 시민 편의시설</td> <td data-bbox="247 750 550 907">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, 야외원형극장, 야외무대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</td> </tr> </table>	2. 체육 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	5. 시민 편의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, 야외원형극장, 야외무대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	<p>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04 369 987 728"> <tr> <td data-bbox="604 369 684 728">2. 체육 시설</td> <td data-bbox="684 369 987 728">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피클볼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604 750 684 907">5. 시민 편의시설</td> <td data-bbox="684 750 987 907">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</td> </tr> </table>	2. 체육 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피클볼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	5. 시민 편의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	<p>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
2. 체육 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시민 편의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, 야외원형극장, 야외무대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체육 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피클볼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시민 편의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자벌레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7 1176 550 1982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 및 이용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한강 르네상스 선박</td> <td>1회 승선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</td> <td>3,000~5,000원 5,000~10,000원</td> <td rowspan="2">1.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 별시 미래 한강본부장이 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>1회 대여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 (4시간 이내, 70명 기준) ※이동운항 가능</td> <td>210,000~350,000원 350,000~7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그 밖의 선박</td> <td>1회 승선 · 어린이 · 성인(19세 이상)</td> <td>1,000~1,500원 2,000~3,000원</td> <td>2.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~90%를 추가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한강 르네상스 선박	1회 승선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	3,000~5,000원 5,000~10,000원	1.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 별시 미래 한강본부장이 정한다.	1회 대여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 (4시간 이내, 70명 기준) ※이동운항 가능	210,000~350,000원 350,000~700,000원	그 밖의 선박	1회 승선 · 어린이 · 성인(19세 이상)	1,000~1,500원 2,000~3,000원	2.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~90%를 추가한다.	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04 1176 987 1982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 및 이용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선박</td> <td>&lt;좌동&gt;</td> <td>&lt;좌동&gt;</td> <td rowspan="2">&lt;좌동&gt;</td> </tr> <tr> <td>&lt;좌동&gt;</td> <td>&lt;좌동&gt;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&lt;삭제&gt;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선박	<좌동>	<좌동>	<좌동>	<좌동>	<좌동>	<삭제>			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
한강 르네상스 선박	1회 승선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	3,000~5,000원 5,000~10,000원	1.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 별시 미래 한강본부장이 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
	1회 대여 · 어린이 · 청소년 (6~18세) · 성인 (19세 이상) (4시간 이내, 70명 기준) ※이동운항 가능	210,000~350,000원 350,000~7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선박	1회 승선 · 어린이 · 성인(19세 이상)	1,000~1,500원 2,000~3,000원	2.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~90%를 추가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
선박	<좌동>	<좌동>	<좌동>																								
	<좌동>	<좌동>																									
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	수정안	
2 체육시설		2 체육시설		2 체육시설 (개정안과 같음)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구분	기준 및 이용료	구분	기준 및 이용료
테니스장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 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 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	테니스장 피클볼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	<좌동>	<좌동>
	월간 정기 사용 시(조 조시간에 한 하며 1일 2 시간 이내 사용)		<좌동>	<좌동>	
	1면 1회 10 시간 이내 전 용사용 (체 육경기) 시		<좌동>	<좌동>	
3 휴양시설	3 휴양시설	3 휴양시설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
강변 물놀이장	어린이 (6~12세) 1,000~ 1,500원		물놀이장	<좌동>	<좌동>
	청소년 (13~18세) 1,500~ 3,000원			<좌동>	<좌동>
	성인 (19세 이상) 3,000~ 3,200원			<좌동>	<좌동>
수영장	어린이 (6~12세) 2,700~ 3,800원		<좌동>	<좌동>	<좌동>
	청소년 (13~18세) 3,600~ 5,100원		<좌동>	<좌동>	
	성인 (19세 이상) 4,500~ 6,400원		<좌동>	<좌동>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345,000~ 500,000원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1,000,000원 이하	<삭제>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750,000원 이하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750,000원 이하	<좌동>

현 행			개 정 안	수 정 안
5 시민편익시설			5 시민편익시설	5 시민편익시설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≤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야외 원형극장	1시간 기준	11,000~ 16,000원		
	1일 사용시	100,000~ 150,000원		
야외무대 사 용	1회당			
	- 주간(08:00 ~ 18:00)	72,000~ 100,000원		
	- 야간(18:00 ~익일 08:00)	140,000~ 200,000원		
		비 고		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”를 “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 호”를 “각 목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 나. 여의도 물빛무대 다. 서울수상레포즈센터 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
2. 체육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피클볼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
3. 휴양시설	가. 캠핑장, 분수대, 강변물놀이장, 수영장, 선텐장, 전망쉼터, 낚시터(단,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)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
4. 학습시설	가. 자연학습장, 물고기길, 생태학습지원시설(수변생태학습센터, 한강야생탐사센터), 여의도 셋강 방문자센터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
5. 시민편익시설	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. 교량전망카페, 뚝섬 자벌레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
6. 유희시설	가. 어린이놀이터, 자전거공원(MTB코스장, 익스트림장, 자전거교육장 등), 드론장, 레이싱경기장, 자전거대여소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
7. 공원편의시설	가. 주차장, 화장실, 자전거보관소, 조명시설, 음수대, 그늘막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8. 조경시설	가. 잔디밭, 꽃단지, 유채단지, 갈대밭, 보리밭, 초지, 호안 나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
9. 그 밖의 시설	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설치된 시설

[별표 2]

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1. 수상이용시설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
선 박	한강 르네상스호	1회 승선 · 어린이·청소년(6~18세) · 성 인(19세 이상)		3,000~5,000원 5,000~10,000원	1.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한다. 2.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~90%를 추가한다.	
		1회 대여 · 어린이·청소년(6~18세) · 성 인(19세 이상) (4시간 이내, 70명 기준) ※이동 운항 가능		210,000~350,000원 350,000~700,000원		
여의도 물빛무대		1회당(3~4시간) · 문화공연 · 그 밖의 대관		500,000~820,000원 1,000,000~1,640,000원		
서울 수상 레포 츠센 터	수상계류장	일간이용료		월간이용료	1.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. 2.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(2시간 이내) 기준이며, 교육 프로그램(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)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. 3.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. 다만,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면제한다. 4.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. 5.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가.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.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. 각종 행사(국제대회, 축제, 공연 등)가 개최되는 경우 라.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
		7,000~35,000원		131,000~460,000원		
	육상계류장	일간이용료		월간이용료		
		6,000~18,000원		119,000~302,000원		
	장비보관함	1일	4,000~10,000원			
		1개월	50,000~110,000원			
		1년	280,000~420,000원			
	수상레포츠 프로그램		어린이 (6~12세)	청소년 (13~18세)		성인 (19세 이상)
	체험	무동력	8,000~30,000원	10,000~36,000원		10,000~48,000원
		동력	20,000~50,000원			
교육	무동력	40,000~100,000원				

	경사면 (슬립웨이)	1일	6,000~20,000원	
--	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	--

## 2. 체육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
축 구 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	10,000~40,000원 200,000~280,000원
어린이야구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	7,200~10,000원 100,000~150,000원
성인야구장	면당 1회 3시간 이내, 단체독점 사용시	20,000~87,000원
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	3,600~5,100원 68,000~96,000원
테니스장 피클볼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  월간 정기사용 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 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·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·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·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  108,000~154,000원  70,000~150,000원
국궁장	1일(3시간 이내) 코스체험 1회 1개월	4,000~7,000원 4,000~7,000원 40,000~60,000원
축구교육장	1개월(월 4회, 주 1회 50분 기준)	60,000~80,000원
배드민턴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	1,000~3,000원 27,000~38,000원
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 장	어린이(6~12세) ·1회 청소년(13~18세) ·1회 성 인(19세 이상) ·1회	1,000~1,500원 1,500~2,000원 2,000~3,000원
파크골프장	어린이(6세 이상 12세 이하) 1회당 청소년(13세 이상 18세 이하) 1회당 성 인(19세 이상) 1회당	2,000~3,000원 3,000~4,000원 4,000~6,000원
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원

비 고 : 이용시간은 06:00부터 22:00까지로 하되 일출·일몰시간과 조명시설 유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  
(조조시간 : 06:00~09:00)

### 3. 휴양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
캠핑장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.
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
	캠프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
물놀이장	어린이( 6~12세)		1,000~1,500원	
	청소년(13~18세)		1,500~3,000원	
	성 인(19세 이상)		3,000~3,200원	
수영장	어린이( 6~12세)		2,700~3,800원	
	청소년(13~18세)		3,600~5,100원	
	성 인(19세 이상)		4,500~6,400원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(4인 이하 기준)		750,000원 이하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4. 학습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기획전시실	기본(5일 이내)	160,000~250,000원	
	1일 추가시	21,000~32,000원	
강 연 홀	1시간 기준	9,100~12,000원	
	1일 사용시	91,000~120,000원	

### 5. 시민편익시설

### 6. 유희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		
	· 1인승	2,700~3,800원	
	· 2인승	5,400~7,600원	
	· 다인승	15,000~22,000원	
	· 전기동력	8,000~11,000원	
	· 기타	4,000~6,000원	
	추가요금(10분당)		
	· 1인승	500~700원	
	· 2인승	1,000~1,500원	
	· 다인승	2,500~3,500원	
· 전기동력	1,300~1,800원		
· 기타	1,000~1,500원		
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1회당(4시간 기준) · 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

7. 공원편의시설(주차장)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
	1회주차(1구획)		1일주차	월정기권
	기본요금	초과 10분당		
여의도 한강공원	최초 30분 1,000~3,000원	300원~400원	13,000~19,000원	여의도샛강쪽(4, 5주차장) 72,000~100,000원 한강본류호안쪽(1, 2, 3주차장) 91,000~120,000원
그 밖의 한강공원	최초 30분 1,000~1,500원	200원~300원	9,100~12,000원	45,000~64,000원
비 고				
1)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.				
2) 여의도한강공원 1, 2, 3, 4, 5주차장 중 2주차장(마포대교 남단, 한강본류호안쪽)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				

8. 기 타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
영화촬영	1회당 - 주 간 (08:00~18:00) - 야 간 (18:00~익일 08:00)	100,000~160,000원 210,000~330,000원
녹 화	1시간당 초과시간당	23,000~33,000원 11,000~16,000원
잔디발행사	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m <sup>2</sup> 당	30~40원
도로점용 행사	5km당(1일 이내)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발행사는 별도로 징수함	45,000~64,000원
입 장 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(콘서트, 전시회 및 그 밖의 공연)	입장권 발매 총액의 10%
서울함공원	어린이( 6~12세)	700~2,000원
	청소년(13~18세)	1,500~3,000원
	성 인(19세 이상)	2,000~4,000원
	단 체(20인 이상)	
	- 어린이( 6~12세)	500~1,500원
	- 청소년(13~18세)	1,000~2,000원
	- 성 인(19세 이상)	1,500~3,000원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한강공원</u>”이란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호의 <u>공원녹지</u>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<u>각 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11. ~ 1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           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“<u>한강공원</u>”이란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호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----- <u>각 목</u>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	개정안	
<p>[별표 1]</p> <p>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</p>		<p>[별표 1]</p> <p>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</p>	
2. 체육시설	<p>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</p> <p>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</p>	2. 체육시설	<p>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<u>피클볼장</u>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</p> <p>나.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</p>
5. 시민편의시설	<p>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</p> <p>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<u>자별레</u>, <u>야외원형극장</u>, <u>야외무대</u></p> <p>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</p>	5. 시민편의시설	<p>가.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</p> <p>나. 교량전망카페, 독섬 <u>자별레</u></p> <p>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</p>
<p>[별표 2]</p> <p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		<p>[별표 2]</p> <p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	
1. 수상이용시설		1. 수상이용시설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
선박	<p>1회 승선</p> <p>· 어린이·청소년 (6~18세) 3,000~5,000원</p> <p>· 성인 (19세 이상) 5,000~10,000원</p>	<p>1.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 정한다.</p> <p>2.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~90%를 추가한다.</p>	
	<p>한강 르네상스호</p> <p>1회 대여</p> <p>· 어린이·청소년 (6~18세) 210,000~350,000원</p> <p>· 성인 (19세 이상) 350,000~700,000원</p> <p>(4시간 이내, 70명 기준) ※이동 운항 가능</p>		
	<p>그 밖의 선박</p> <p>1회 승선</p> <p>· 어린이 1,000~1,500원</p> <p>· 성인(19세 이상) 2,000~3,000원</p>		
		<p>선박 &lt;좌동&gt;</p>	<p>&lt;좌동&gt;</p>
		<삭제>	

현행			개정안			
2 체육시설			2 체육시설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	구분	기준 및 이용료		
테니스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.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.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.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	테니스장 피클볼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	<좌동>	
	월간 정기사용 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)	108,000~154,000원		<좌동>	<좌동>	
	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	70,000~150,000원		<좌동>	<좌동>	
3 휴양시설			3 휴양시설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구분	기준 및 이용료	비고	
강변 물놀이장	어린이 (6~12세)	1,000~ 1,500원		물놀이장	<좌동>	<좌동>
	청소년 (13~18세)	1,500~ 3,000원				
	성인 (19세 이상)	3,000~ 3,200원				
수영장	어린이 (6~12세)	2,700~ 3,800원		<좌동>	<좌동>	<좌동>
	청소년 (13~18세)	3,600~ 5,100원				
	성인 (19세 이상)	4,500~ 6,400원			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345,000~ 500,000원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 750,000원 이하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

현 행			개 정 안
5 시민편익시설			5 시민편익시설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<삭 제>
야외 원형극장	1시간 기준	11,000~ 16,000원	
	1일 사용시	100,000~ 150,000원	
야외무대 사 용	1회당		
	- 주간(08:00 ~ 18:00)	72,000~ 100,000원	
	- 야간(18:00 ~익일 08:00)	140,000~ 200,000원	